

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[김정태 의원 대표발의]

의안 번호	1595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8. 9.

발의의원 : 김정태 의원, 하중환 의원

1. 제안이유

-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 현실에 맞게 규칙을 개정하여 원활한 회기 운영을 위함.

2. 주요내용

- 군정질문시 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시간을 합리적으로 정비
(안 제66조의2제4항~제5항)

3. 개정규칙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- 「지방자치법」 제71조

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6조의2제4항 중 “96시간”을 “72시간”으로 한다.

제66조의2제5항 중 “48시간”을 “24시간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제66조의2(군정에 대한 질문)</u> ①~③(생략) ④ 군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<u>96시간</u> 전까지 군수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. ⑤ 군수는 질문시간 <u>48시간</u> 전까지 제4항의 질문요지서에 대한 답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의장은 해당 의원에게 이를 지체없이 배부하여야 한다.	<u>제66조의2(군정에 대한 질문)</u> ①~③(현행과 같음) ④----- ----- ----- ----- <u>72시간</u> ----- ----- -----. ⑤----- <u>24시간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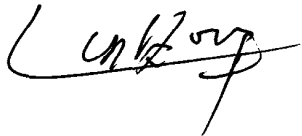
참고

상위 및 관계법령(발췌)

☐ 지방자치법 제71조(회의규칙)

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.

서 명 날 인 서

의 원 명	서 명	날 인
김 정 태	김 정 태	
하 중 환	하 중 환	